# 2020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원현	820614-*****

##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보수월액(고지금액)		소득월액(납부금액)	
결글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214,360	21,970	0	0
02월	214,360	21,970	0	0
03월	214,360	21,970	0	0
04월	210,990	21,620	0	0
05월	210,990	21,620	0	0
06월	210,990	21,620	0	0
07월	210,990	21,620	0	0
08월	210,990	21,620	0	0
09월	210,990	21,620	0	0
10월	210,990	21,620	0	0
11월	210,990	21,620	0	0
12월	210,990	21,620	0	0
연말정산	45,290	3,800		
합계	2,587,280	264,290	0	0
총합계	총합계 2,851,570			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원현	820614-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218,700	0
02월	218,700	0
03월	218,700	0
04월	218,700	0
05월	218,700	0
06월	218,700	0
07월	226,350	0
08월	226,350	0
09월	226,350	0
10월	226,350	0
11월	226,350	0
12월	226,35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접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리	레딧 납부금액	0
합계	2,670,300	0
	총합계	2,670,30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・추납보험료・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원현	820614-****

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:	호	주피보험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	수익자)	종피보험자2(	(수익자)	종피보험자3(	(수익자)	
	하나손해보험	주식회사	개인용하나	·(TM)			
보장성	107-86-24	985	C20200**	***	820614-*****	정원현	610,720
	우정사업년	르부	건강만기	7			
보장성	101-83-02	925	476179**	***	820614-****	정원현	404,400
	우정사업년	르부	올커버암기	니료 기료			
보장성	101-83-02	925	476181**	***	820614-****	정원현	238,800
	인별합계금액						1,253,92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정원현	820614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7-11-84***	연세****	일반	4,800
**5-90-14***	보람****	일반	15,000
**0-03-34***	마들****	일반	7,000
**3-01-97***	연합****	일반	100,000
**1-35-00***	온유****	일반	132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58,8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58,8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하진	170803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7-91-36***	삼성****	일반	331,000
**7-04-49***	복음****	일반	15,400
**2-90-02***	우리****	일반	23,500
**7-90-44***	연세****	일반	214,400
**7-03-79***	신동****	일반	23,200
**8-63-00***	햇살****	일반	2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610,0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610,0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 ■ 수익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은실	860801-****	

## 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상품명	보험계약자		, 성크애 게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피보험자		수령금액 계
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 험(Hi161	860801-*****	김은실	378,060
102-81-32035	L01632****	170803-*****	정하진	378,000
인별합계금액				378,060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원현	820614-*****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18,978,557	102,700	19,600	381,250	19,482,107
3월분	1,447,740	0	0	0	1,447,740
4~7월분	7,377,362	40,000	6,950	93,370	7,517,682
그외 (1~2월,8~12월분)	10,153,455	62,700	12,650	287,880	10,516,685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(1212)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464,210	586,130	711,620	2,142,708	
신용카드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일반	643,566	286,279	846,560	825,998	10,393,101
			653,870	592,480	1,198,640	1,441,040	
			0	22,100	0	8,100	
신용카드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전통시장	0	0	12,700	0	61,100
			9,500	0	8,700	0	
			0	0	0	0	
신용카드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대중교통	2,700	1,350	2,900	0	18,350
			0	0	0	11,400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원현	820614-****

#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10,000	0	0	0	
신용카드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도서공연등	0	0	66,820	0	273,780
			24,500	92,400	58,300	21,760	
			287,539	969,053	736,120	804,360	
신용카드	삼성카드주식회사 (202-81-45602)	일반	923,961	1,274,809	455,119	492,665	8,370,156
			477,830	362,410	1,118,590	467,700	
			0	0	0	5,200	
신용카드	삼성카드주식회사 (202-81-45602)	전통시장	0	0	14,000	0	36,200
			0	2,700	14,300	0	
			0	0	0	0	
신용카드	삼성카드주식회사 (202-81-45602)	대중교통	0	0	0	0	0
			0	0	0	0	
			0	0	0	0	
신용카드	삼성카드주식회사 (202-81-45602)	도서공연등	0	26,550	0	0	107,470
			11,620	0	25,000	44,30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원현	820614-*****

#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0	0	0	0	
신용카드	( 주 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일반	0	0	0	0	215,300
			215,300	0	0	0	
			0	0	0	0	
신용카드	( 주 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전통시장	0	0	0	0	5,400
			5,400	0	0	0	
			0	0	0	0	
신용카드	( 주 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대중교통	0	0	0	0	1,250
			0	1,25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원현	820614-*****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49,500	0	624,100	0	673,600
3월분	12,500	0	44,550	0	57,050
4~7월분	12,000	0	209,500	0	221,500
그외 (1~2월,8~12월분)	25,000	0	370,050	0	395,05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
	· · - · - /		09월	10월	11월	12월		
			0	18,300	12,500	7,200		
직불카드 등	주식회사 티머니 (104-81-83559)	일반	0	4,800	0	0	49,500	
				0	0	6,700	0	
			57,650	53,800	44,550	25,450		
직불카드 등	주식회사 티머니 (104-81-83559)	대중교통	47,250	61,900	74,900	61,900	624,100	
			44,300	53,950	52,350	46,100	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원현	820614-*****

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12,335,238	0	0	0	12,335,238
3월분	27,000	0	0	0	27,000
4~7월분	152,900	0	0	0	152,900
그외 (1~2월,8~12월분)	12,155,338	0	0	0	12,155,338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
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65,000	1,820,000	27,000	0	12,335,238
		88,170	0	64,730	50,000	
		5,546,718	48,400	4,532,220	93,00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20년 01~12월)

## 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정원현	820614-*****		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 기부유형	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105-82-13150	(사 ) 한국희귀 . 난 치성질환연합회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67,080	67,080	0
인별합계금액					67,08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12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